

# 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 대법관 2명 "공모 인정 부족" 반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으로, 다섯번째 선고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국정원 심리 전담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 전담 사이버팀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관계와 선거운동을 지지하고 관여했다고 인정,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은 업무로 사이버 활동을 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해 그 영향력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며 "원심이 정치 활동 관여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원장을 중심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이며 원장과 상급자로부터 순차로 하달되는 지시와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상급자와 원장



농작물 피해 상황 점검 리승용 농촌진흥청장이 19일 장수군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에게 보고한다"며 "이를 직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 업무와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인터넷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했다"며 "특히 직원들에게 집권여당의 정책성과를 옹호하고 야당과 소속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는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8월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작년 9월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19일 전합에 회부했다. /뉴스시

## 스토킹 출소 후, 고소한 여성 부친 흥기로 찌른 남성 징역 10년 선고

호감이 있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잔인한 복수극을 벌인 2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20대 초반·여)씨를 알게 됐다. 그는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지만 A씨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B씨는 만남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만남을 거절당한 A씨는 B씨가 변심했다고 생각, B씨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B씨의 지인들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B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스토킹을 했다. 결국 B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자신인 B씨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됐다고 생각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B씨의 SNS 등을 수차례 살폈고, 그 결과 B씨가 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인근 마트에서 흥기와 둔기, 장갑 등을 구입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 사무실에 있던 B씨의 아버지는 딸을 괴롭혀 온 A씨를 알아보고 "뭘하러 왔나. 나가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A씨는 준비한 흥기로 B씨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등 수차례 흥기를 휘둘렀다. B씨의 아버지는 흥부 쪽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찾아가서 겁 쫓 의사만 있었을 뿐 살해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B씨는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을 계속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글과 쓰레기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고창 양계장 화재... 3억 1000만원 피해

19일 오전 0시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최모(57·여)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구조 양계장 8개 동이 불에 타 닭 3만6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5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소방서 추산 3억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 보증 서준 친척 콤바인 훔친 50대 입건

보증을 서준 친척의 농기계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초 고창군 적성면 한 농가에서 1200만원 상당의 콤바인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친척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가 생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기자

### 우리요양원 나눔숲 조성 추진

전주시가 요양시설 내 방치된 녹지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색복지숲으로 조성한다.

시는 20여명이 생활하는 색장동 우리요양원 기존 농지공간을 치유를 위한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총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요양원 내 청단풍 및 남천식재로 계절감을 느끼게 하고 갈나무와 모과나무 등으로 유실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 수천만원 받아 챙긴 주간지 편집국장 구속

### "광고비 주면 비판기사 안 써", "호의적 기사 써줄테니 광고비 달라"는 등 수법으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북지역 지자체와 각종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수사·금지·관한법률위반·공갈 등)로 전북 익산의 한 주간지 편집국장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에게 "광고비를 주

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 기사 써줄테니 광고비를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전담 진행된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이 정상적인 광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전북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비롯해 금품갈취 및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